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-5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4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착한가격업소 지원내용을 확대하고 그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영업부담을 완화하여 지역물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문 용어 정비(안 제6조 제1호)

나. 착한가격업소 지원내용 확대(안 제6조 제2~5호)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지원)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 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: 2026. 3. 5. ~ 3. 25.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표지판”을 “표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”을 “향상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의 보급 또는 구입비 지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6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호(중전의 제4호) 중 “방역물품”을 “방역물품 보급”으로 한다.

4. 상·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지원

5. 소규모 시설 개선 및 안전 관련 지원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지원)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“착한가격업소” 지정 <u>표지판</u> 제작·교부</p> <p>2.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<u>향상에 필요한 소모품</u> 보급</p> <p>3. <u>마포구 소식지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, SNS 등을 활용한 홍보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4. <u>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5. (생 략)</p>	<p>제6조(지원)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 <u>표찰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2. -----</p> <p>----- <u>향상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의 보급 또는 구입비 지원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-----</p> <p>4. <u>상·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지원</u></p> <p>3. <u>방역물품 보급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5. <u>소규모 시설 개선 및 안전 관련 지원</u>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## 3. 미첨부 사유

-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경제국 고용협력과 김수호
연 락 처	02-3153-8562